예 비 심 사 보 고 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번호 423

2024.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4.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상정)2024. 4. 15.~17. / (의결)2024. 4. 17.

2.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분	추경	구성비(%)	기정	구성비(%)	중감	중감률(%)
	총 계	2,390,752,215	100.00	2,227,864,777	100.00	162,887,438	7.31
(일반회계	2,093,411,495	87.56	1,995,570,318	89.57	97,841,177	4.90
ĵ	투별회계	297,340,720	12.44	232,294,459	10.43	65,046,261	28.00
	공기업특별회계	181,582,860	7.60	144,167,773	6.47	37,415,087	25.95
	기타특별회계	115,757,860	4.84	88,126,686	3.96	27,631,174	31.35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용관)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중감	중감률(%)
총 계	1,268,919,303	1,255,765,473	13,153,830	1.05
일반회계	1,210,348,941	1,201,626,633	8,722,308	0.73
특별회계	58,570,362	54,138,840	4,431,522	8.19

□ 세입예산

- **일반회**계 : 총 <u>978억 4,117만 7천 원이 증가</u>된 규모임.
 - 세외수입 79억 1,443만 9천 원,
 - 국도비보조금 87억 1.344만 4천 원
 - 순세계 잉여금 550억 원
 - 예탁금 및 예수금 : 300억 원 등
- 기타**특별회계** : <u>총 276억 3,117만 4천 원이 증가</u>된 규모임
 - 세외수입 : 11억 8,885만 1천 원
 - 보조금 : 45억 4,367만 8천 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억 9,864만 5천 원 등
- 공기업**특별회계** : 총 374억 1,508만 7천 원이 증가된 규모임
 - 세외수입 : 2억 3,536만 4천 원
 - 보조금 : △5억 1,070만 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6억 9,042만 3천 원 등
-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

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u>시 전체예산의</u> 53.08%인 1조 2,689억 1,930만 3천 원 규모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16억 2,663만 3천 원에서 0.73인 87억 2,230만 8천 원이 증가한 1조 2,103억 4,894만 1천 원으로 <u>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82</u>에 해당함.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41억 3,884만 원에서 8.19인 44억 3,152만 2천 원이 증가한 585억 7,036만 2천 원으로 <u>시 전체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50.60에</u> 해당함.(공기업 특별회계 없음)

□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268,919,303	1,255,765,473	13,153,830	1.05
	소계	968,092,412	968,136,050	△43,638	0.005
	복지정책과	16,785,474	16,550,270	235,204	1.42
	복지행정과	112,326,658	109,735,521	2,591,137	2.36
복지국	노인복지과	396,400,102	402,555,628	△6,155,526	△1.53
	장애인복지과	99,686,978	98,002,722	1,684,256	1.72
	여성아동과	97,966,864	97,836,417	130,447	0.13
	보육정책과	244,926,336	243,455,492	1,470,844	0.60
	소계	223,621,198	216,057,668	7,563,530	3.50
	환경정책과	33,248,180	33,248,180	0	0.00
	기후에너지과	53,214,360	53,631,237	△416,877	△0.78
환경국	자원순환과	118,957,523	115,564,126	3,393,397	2.94
	생태하천과	9,707,459	5,930,259	3,777,200	63.69
	산림녹지과	6,638,147	6,436,229	201,918	3.14
	공원조성과	1,855,529	1,247,637	607,892	48.72
	소계	33,127,137	31,921,582	1,205,555	3.78
いしゃしる	보건정책과	11,845,564	11,755,387	90,177	0.77
남양주	건강증진과	13,485,430	13,420,592	64,838	0.48
보건소	치매건강과	4,989,934	4,561,241	428,693	9.40
	동부보건센터	2,806,209	2,184,362	621,847	28.47
1101ス	소계	11,781,153	11,702,255	78,898	0.67
남양주 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	6,261,447	6,247,549	13,898	0.22
궁장보건요	건강증진과	5,519,706	5,454,706	65,000	1.19
	소계	32,297,403	27,947,918	4,349,485	15.56
공원녹지	공원관리과	18,951,923	17,345,710	1,606,213	9.26
관리사업소	하천공원관리과	9,625,273	6,936,886	2,688,387	38.75
	휴양시설관리과	3,720,207	3,665,322	54,885	1.50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일반회계)

O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기정예산액 9,602억 4,720만 3천 원 보다 0.06% 감소한 9,597억 1,131만 6천 원이며,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3억 3,096만 8천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45억 1,959만 7천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16억 9,706만 8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14억 5,359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 5,900만 원, 장애인복지관건립 기금 10억 원,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1억 9,440만 원 등을 증액편성

O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기정예산액 1,698억 767만 5천 원 보다 2.13% 증가한 1,734억 3,193만 2천 원이며,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8억 4,805만 원, 용암천·왕숙천 등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 37억 6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2억 원,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등을 편성

O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

기정예산액 319억 2,158만 2천 원 보다 3.78% 증가한 331억 2,713만 7천 원이며, 청사관리 1억 757만 원 등을 편성

O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

기정예산액 117억 225만 5천 원 보다 0.67% 증가한 117억 8,115만 3천 원이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5천만 원 등을 편성

O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기정예산액 279억 4,791만 8천 원 보다 15.56% 증가한 322억 9,740만 3천 원이며,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3억 8천만 원, 도시공원 관리

운영 7억 3,820만 4천 원, 물의정원 야관경관 조성사업 3억 원, 하천 경관 유지관리사업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

-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특별회계)
-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8,884만 7천 원보다 6.24% 증가한 83억 8,109만 6천 원을 편성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07억 7.010만 9천 원이며 예산규모 변동은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기정예산 152억 9,512만 2천 원보다 25.76% 증가한 192억 3,439만 5천 원을 편성
-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해당사항 없음
- □ 검토 의견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 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 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O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O 없 음

6. 심사보고 요지

O 복지국 예산안

(단위:처원)

소관	세부사업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비고
복지국		194,400	-	-	
보육정책과		194,400	_	-	
(p173/349)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194,400	_	-	

■ 본 사업은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시만의 특화된 어린이집을 브랜딩하여 차별화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방향 설정에 있어 지속 성을 가지며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면밀한 운영계획과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 교육 프로그램 설계, 목표설정에 따른 성과 분석 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O 환경국 예산안

(단위:처워)

소관	세부사업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비고
환경국		100,000	1	1	
생태하천과		100,000	_	_	
(p196/415)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공사	100,000	_	_	

■ 잔디광장 조성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양·휴식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하천 침수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는 없는지 지역적 특성 파악과 다용도 활용 방안 등 향후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자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7. 심사결과

○「원안가결」